

조례안예고

창원시의회 공고 제2026 - 62호

창원시 산불방지 활동 지원 조례안

「창원시 산불방지 활동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6년 8월 24일

창원시 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창원시 산불방지 활동 지원 조례안

2. 제정이유

기후변화로 불규칙적이고 대형화되는 산불을 방지하기 위해 이에 대한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창원시의 산림과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나. 시장의 책무에 대해 정함(안 제3조)
- 다.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 라.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 마.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창원시의회의장(참조: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우)51435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

창원시의회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팀(전화:055-225-5375, FAX:055-225-4743)

라. 의견제출 방법: 우편, 팩스, 이메일(windhwan80@korea.kr), 직접 방문 등

창원시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우완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1
----------	----

발의연월일 : 2026. 8. 24.

발 의 의 원 : 이우완 · 감규상 · 곽은정 · 권순재 · 류성국
문순규 · 박영주 · 박해정 · 변보미 · 서명일
이정희 · 전홍표 · 차중현 의원(13명)

1. 제안이유

기후변화로 불규칙적이고 대형화되는 산불을 방지하기 위해 이에 대한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창원시의 산림과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나. 시장의 책무에 대해 정함(안 제3조)
- 다.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 라.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 마.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 법령

창원시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산불방지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과 시민의 생명 및 재산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산림재난방지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불방지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불방지 활동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산불방지 활동 지원) 시장은 산불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개인 또는 관련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림 정화 및 산불방지 홍보
2. 산불진화 참여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산불방지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민, 단체 및 산불재난방지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산림재난방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림재난”이란 자연적 또는 인위적으로 발생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이나 산림 등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산불, 산사태, 토석류 및 산림병해충을 말한다.
2. “산불”이란 자연적 또는 인위적으로 발생한 불로 산림이 타는 것을 말한다.
3. “산사태”란 「사방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산사태를 말한다.
4. “토석류”란 「사방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토석류를 말한다.
5. “산림병해충”이란 산림에 있는 식물과 산림이 아닌 지역에 있는 수목(「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작물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해를 끼치는 병과 해충을 말한다.
6. “산림재난피해지”란 산림재난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산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7. “복구”란 산림재난피해지를 인공구조물 설치와 식물의 파종·식재 등을 통하여 훼손 이전의 상태로 안정화시키는 활동을 말한다.
8. “산림재난방지”란 산림재난으로 발생하거나 예측되는 피해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 가. 산불을 예방·대비·대응하고 산불로 발생한 피해를 복구하는 모든 활동(이하 “산불방지”라 한다)
 - 나. 산사태 및 토석류(이하 “산사태등”이라 한다)를 예방·대비·대응하고 산사태등으로 발생한 피해를 복구하는 모든 활동(이하 “산사태등방지”라 한다)
 - 다. 산림병해충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지역에 대하여 발생 여부, 발생 정도, 피해 상황 등을 조사하거나 진단하는 모든 활동(이하 “산림병해충 예찰”이라 한다)과 산림병해충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예방하거나 이미 발생한 산림병해충을 약화시키거나 제거하는 모든 활동(이하 “산림병해충 방제”라 한다)
9. “산사태취약지역”이란 산사태등으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제22조에 따라 지정 또는 변경하여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급경사지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붕괴위험지역
 - 나.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접도구역을 포함한다)
 - 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물

10. “산림재난방지기관”이란 산림재난방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산림청을 말한다.
11.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이란 산림재난방지와 관련되는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12. “산림재난 위험도평가”란 산림재난으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피해예측과 피해저감 효과를 위하여 기후·기상 등 자연 정보와 거주·교통 등 생활적 정보 및 지형·임상·토질 등 산지 정보를 활용하여 위험도를 분석·예측·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13. “산림재난 위험지도”란 산림재난 위험도평가 결과와 공간정보 기술을 활용하여 산림재난 위험등급을 표현한 지도를 말한다.
14. “산림재난정보시스템”이란 산림재난 관련 정보와 자료를 수집·가공·저장·검색, 표출, 송수신 및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된 기기·프로그램 및 데이터베이스 등의 결합체를 말한다.

제16조(산불의 예방 등) ①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권한이나 사무를 위탁받거나 대행하는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불을 피우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화기(火器), 인화(引火) 물질 및 발화(發火) 물질의 제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불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산림청장은 효율적인 산불 예방·대비 체계를 마련하여야 하며,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불 발생에 대비하여 산불방지에 필요한 인력, 장비 및 예산을 확보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산불 진화를 위한 헬리콥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불 진화 장비를 도입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④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산불방지에 필요한 장비가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 ⑤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불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산불피해 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인근의 임목을 제거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제5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산림소유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하거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제5항 전단에 따른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해당 기관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그 사실을 공고하는 것으로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 ⑦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불방지에 관한 연구·조사 및 산불 예방을 위한 숲가꾸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불방지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